

위생관리계획의 수립 (3)

가톨릭의대산업의학연구소
소장 이광목

지난호에서는 환경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판단은 어떻게 할것인가를 이야기 하였다. 이번에는 계획은 누가 어떻게 세울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여 본다.

III. 제 3 단계 (계획의 입안)

계획을 세울때는 다음과 같은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방침

이미 발표된 회사의 방침을 기초로해서 각 생산부서에서 이에 부합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회사의 방침과 맞지 않게 생산부서의 독자적인 계획을 작성하면 일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2) 전원이 참가하는 계획

계획을 실천에 옮길때에는 각자가 맡은 책임과 권한을 주어 하도록 한다. 즉 모든 사람이 참가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따라서 관리자는 자기 자신과 부하직원에 대해서, 작업원은 자기자신과 동료에 대해서, 기술자는 자기자신과 자기가 제공하는 설비나 재료를 사용하는 작업원에 대해서 각각 위생관리의 책임을 갖어야 한다. 이렇게 계획 수립때부터 실천할때 까지 모든 사람을 참가시키면 참가의식이 높아져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윗사람의 일반적인 태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점을 본다.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는다고 회의를 하는 일이 있는데 실제로는 회의가 아니며 모아놓고 야단치는 일로 그치고 여러사람의 의견이 모여진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회의중에는 자기 의사에 반대되는 의견을 잘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3) 과목적인 계획이 안되도록 할 것.

너무나 이상적이거나 탁상공론적인 숫자만을 내세워 짜여진 계획은 효과를 거두기 힘든다. 또 계획을 위한 계획이어서는 안된다. 적은 일이라도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

또 과거에 알려진 문제점에만 주안점을 두지말고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욱 예방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

4) 대책의 선택

한가지 문제점을 여러각도로 분석하여 보면 대책도 여러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재해나 질병의 원인을 중원인 (重原因)분석해 보면 여러가지 요인이 겹쳤을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요인중 어떤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쉽고 효과가 있을것인가



를 검토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실례로서 노출되어 있는 벨트 (belt)에 대한 대책으로는 회의 시에 주의를 준다든가 하는 것 보다는 안전한 덮개를 하여야 하고 유해한 가스가 발생할 때는 보호구를 착용하기 보다는 국소배기 장치를 하여주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손쉽게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5)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것

표어를 들어 놓은 것 같은 계획은 실제 주역들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거나 거짓 말 같은 결과만 낳게 된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되고 있는 것의 하나는 “무재해운동이란 계획”이다. 이 “슬로건”을 내건 회사를 보면 각부서 단위 별로 무재해일수가 내걸어지고 있는데 모두 200 일이 넘도록 재해가 없다고 되어 있는 곳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재해를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인근 병·의원에 가서 조사하여 보면 상당수의 환자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보고를 하지 않고 자체내에서 치료하는 것이다. 또 재해가 일어나기 쉬운 특정 작업은 임시직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보고가 없다. 몇 만명의 인원이 일을 하는 업체에서 년간 무재해가 기록되어 상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 “무재해운동”的 표어 뒤에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하고 그 계획안을 실천에 옮김에 있어서 각각의 분담책임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6) 작업관리를 현장중심으로

안전관리·위생관리는 종래의 위생이나 안전관리 담당자의 일로 생각했던 것을 현장중심의 일로 바꿔야 한다. 관리자는 어디까지나 관리를 하는 것이고 실천은 현장중심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서 위생관리가 감독 위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따라서 감독자나 관리자만의 일이 아니고 작업자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되도록 한다.

7) 시간적인 계획을 명확하게

년간계획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시기적 계획이 없으면 모든 일이 년말에 집중되고 따라서 엉터리 같은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기적 계획은 될 수 있는 한 서로 연관이 있는 계통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연관이 계획마다의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8) 목표는 구체적으로

년간계획은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어야 하므로 당연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실례로서 표어를 만들 때도 단순히 시조조로 읽는데 “리듬”이 있어야 한다는데에만 유의하여 짧아지고 간소화 되는 일이 흔히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어떤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수치로 표시하고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준다. 즉 “점검 정비는 철저하게”라는 표어는 효과를 높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신 점검, 정비는 점검표를 만들어 매일 매일 실시하자”로 하는 것이 더욱 뚜렷해 진다. 목표에 방법까지 첨가된 것이 좋다는 이야기다. 이와 같이 목표를 세웠으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방법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효과를 높이는데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듣기 좋고 누가 보아도 그럴듯한 구호나 표어가 실제로는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것은 그 구체적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만일에 구체적인 방법을 안출할 수 없었다면 그러한 계획이나 표어는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실례를 들어 본다. 재해가 많은 어떤 사업장에서 “하루에 한 재해를 줄이자”라는 표어를 붙였다. 이 발상은 매일 한건씩 재해를 줄이면 1년에 365 건의 재해가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매일 한건씩 재해를 줄일것인가는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만일에 방법을 생각하였더라면 불가능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

리고 그 회사는 1년에 재해가 평균적으로 150건 밖에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연간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실천방법, 가능성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전원이 참가한다는 것과 책임제도 그리고 시기적인 계획이 확고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일과 결과와 진행을 “체크”하고 결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계획을 알아보기로 한다.

보건관계자 직무교육안내

◇ 저희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로부터 “사업장 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 (83.5.21) 되어, 다음과 같이 '84년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 직무교육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 여러분에게 사업장보건관리에 관한 기초 이론과 실무를 익히게 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의 유지와 근로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은 반드시 '84년도에 신규과정을 이수하여 주시고, 아직 보건관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하루속히 보건관계자 선임신고를 필한 다음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4 직무교육 계획 (6 월중)

• 교육 대상	• 지 부 명	• 관할 지역	• 교육 기간
보건 관리자	서 울 지 부	서 울 · 인천 경기 · 강원 전 남	6/23, 6/30, 7/7
	부 산 지 부	부 산 · 경남 대 구 · 경북	6/16, 6/23, 6/30
건 강 관 리	서 울 지 부	서 울 · 인천	6/12 ~ 6/15
보 건 담 당 자		경기 · 강원	6/26 ~ 6/29
	부 산 지 부	부 산 · 경남	6/12 ~ 6/15